

취업지원명예상담원 모집 공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청소년들의 미래 직업설계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령자의 취업 등을 도와줄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 1.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모집예정인원 : 4명

2. 근무 예정기관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내 고용센터

구분	계	의정부 고용센터	구리 고용센터	남양주 고용센터	동두천 고용센터
인원	4명	1명	1명	1명	1명

※ 자기소개서에 근무가능지역(고용센터) 반드시 명시.

3. 업무내용

- 청소년 직업심리·적성검사 및 직업진로상담
 - 센터방문자·프로그램참여자 상담, 관내 학교 순회 서비스
- 취업이 어려운 중·고령 구직자에 대한 종합상담
 - 고용센터 방문자·프로그램 참여자 상담
 - 사회복지관·자활후견기관·노숙인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순회 서비스
- 그 밖에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관련 업무

4. 근무조건

가. 위촉기간 : '16. 2. 22.(월)~'16. 12. 21.(수)(10개월)

※ 위촉권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나. 수당 : 시급 6,100원, 월 79만원 수준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5시간(파트타임)

5. 응시자격

- 교사·교수, 기업·공공기관의 인사 등 업무
- 고용노동부 퇴직자
- 고용·노동분야 공공·민간연구소에서의 근무 또는 연구
- 사회단체에서 상담업무 등 경력자(해당 경력 5년 이상)

- 반드시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자

※ 해당 경력 및 연령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6. 심사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나. 2차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7. 원서접수 및 심사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1.25.(월) ~ 2016. 2. 1.(월)까지

- 접수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력

※ 모든 접수는 워크넷 e-채용마당으로만 가능(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

- 지원자는 워크넷에 개인회원 대상으로 사전에 회원가입 필수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2.4.(목) 지청 및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다. 면접전형: 2015.2.17.(수) 예정 [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6.2.18.(목) 예정 개별통보

- 면접전형일자에 따라 합격자 발표 일정 조정 가능

8. 제출서류

<원서접수(위크넷) 시 제출>

가. 응시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자격증 사본 1부

- ※ 교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능력개발교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및 전산관련(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프리젠테이션) 자격증 소지자 우대

라. 경력증명서 1부

- ※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경력자로서 고용관련 분야 종사 등 경험자 우대

마. 주민등록초본 1부

바. 최종학력증명서 1부

사. 취업취약계층(장애인·가정부양책임자·저소득층·취업보호대상자) 각 해당 증명서 1부(위촉선발시 우대)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가정부양책임자: 세대원인 경우 실질적으로 가정부양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에 따라 가점 부여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 [첨부 서식 참조] 하는 경우에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및 예비후보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취업지원 명예상담원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031-850-7711)

[첨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충북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